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1.

국토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3월 17일, 성일종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00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(2022.9.20.)

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부

제410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2023.11.22.)

상정 · 축조심사

제410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2023.11.29.)

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10회 국회(정기회) 제8차 국토교통위원회(2023.11.30.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국회의원 성일종)

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외국학교법인이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를 지원하고,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임직원 자녀들이 입학·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, 정작 초·중등 외국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지방이주기업 자녀들의 학교선택의 폭을 좁혀서 결과적으로 내·외국인 가족단위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외국교육기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8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송병철)

가. 기업도시 내 초·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허용(안 제38조)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)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)을 설립·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경제자유구역”은 “개발구역”으로, “경제자유구역위원회”는 “위원회”로 본다.	제38조(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) ----- ----- ----- <u>외국교육기관을</u>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
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외국학교법인이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¹⁾ 중에서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이나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외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²⁾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

1)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외국교육기관”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·운영되는 학교(분교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제22조(외국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 등) ① 외국학교법인은 「사립학교법」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: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: 교육부장관

2)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
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현행법에 따르면,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이 초·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지방이주기업 자녀들의 학교선택의 폭을 좁혀서 결과적으로 내·외국인 가족단위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,

초·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된 새만금사업지역³⁾과 비교할 때, 관광중심형 기업도시인 영암·해남 기업도시 및 태안 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, 관광, 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새만금사업지역과 유사성이 높다는 의견⁴⁾이 있으며,

민간이 주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자 유치에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기업도시 유입도 촉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⁵⁾이 있다고 보임.
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4. 특수학교

5. 각종학교

3)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61조(외국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 등) ① 외국학교법인은 「사립학교법」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: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: 교육부장관

4)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의견임.

다만, 교육부는 국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교육기관은 예외적으로 설립이 허용된 것으로서, 공교육인 초·중등교육의 특성 및 내국인 학생이 입학 가능한 높은 학비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확대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하여 전국 4개 기업도시의 내·외국인 학령인구 유입 등 교육 수요에 대한 조사와 함께 기업도시 인근 학교와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바,

기업도시 인근 학교와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, 공교육인 초·중등교육의 특성, 기업도시의 교육 수요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초·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

4. 대체토론 요지

(생략)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: 김정재)

5)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라남도도 같은 의견임.

김정재의원 및 성일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‘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은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(생략)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

※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.